

제23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의 (2019.3.18.)

# 조례·일반의안 심사 보고서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 목 차

1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3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 -----	9
4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5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6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	30
7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8	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3
9	거창소방서 웅양119지역대 공용건축물 신축 및 토지 무상사용 동의안 -----	50
10	주택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54

#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2. 25, 표주숙의원의 10인 발의
- 나. 회부일자 : 2019. 2. 25.
- 다. 상정일자 : 제23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9. 3. 13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표주숙 의원]

- 가. 제안이유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고령운전자 용어 정의 추가 (안 제2조 3호)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등 지원(안 제9조 3항)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재승]

-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2조 제3호에 고령운전자 용어 정의 추가
  - 안 제9조 3항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등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 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

##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 증진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령운전자”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만원 이내의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고령운전자”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9조(재정지원 등) ①~② (생략)	제9조(재정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만원 이내의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2. 25, 김종두의원외 10인 발의
- 나. 회부일자 : 2019. 2. 25.
- 다. 상정일자 : 제23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9. 3. 13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종두 의원]

- 가. 제안이유
  -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함.
- 나. 주요내용
  - 병역명문가를 정의함(안 제2조)
  -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등을 정함(안 제5조)
  - 병역명문가에 대한 우대사항을 정함 (안 제6조)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 수송대관광지 시설이용료
    - 보건소 진료비
    - 문화예술 관람권 매년 4매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재승)

- 본 조례안은 3대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2조에서 병역명문가를 정의하고
  - 안 제5조에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등을 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우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 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서를 가지고 있는 가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병역이행자 중 한명 이상이 거창군(이하 “군”이라고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에 적용한다.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계획)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남지방병무청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예우 등)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시책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대)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다음 각 호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수송대관광지 시설이용료
3. 보건소 진료비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매년 문화예술 관람권 4장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동차

②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③ 「거창군 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2. 25, 거창군수 제출
- 나. 회부일자 : 2019. 2. 25.
- 다. 상정일자 : 제23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9. 3. 13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진태 경제교통과장]

- 가. 제안이유
  -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활성화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거창사랑상품권을 발행·운용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거창사랑상품권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상품권 종류와 유효기간을 정함(안 제4조)
    - 5천원권, 1만원권
    - 발행일부터 5년 유효함
  - 가맹점의 지정, 준수사항, 지정취소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제7조)
  - 판매대행점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정함(안 제8조·제9조)
  - 환전 청구 및 환전에 대하여 정함(안 제10조)
    - 환전한도 : 가맹점당 월 1,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음

- 할인판매, 상품권 활성화 시책에 대하여 정함(안 제11조, 제12조)
  - 상품권 금액의 6퍼센트 이내에서, 개인에게만 연간 400만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인 판매
  - 추가 할인 판매 : 설 및 추석 등 연 4회 이내 상품권 금액 10 퍼센트 이내, 이용 실적이 우수한 사용자
- 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유통질서 확립에 대하여 정함(안 제13조, 제14조)
- 환전되지 않은 상품권의 귀속, 우대한 금액의 환수에 대하여 정함(안 제15조, 제16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재송]**

- 본 조례안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활성화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거창사랑상품권을 발행·운용하는 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2조에서 거창사랑상품권 용어를 정의하고
  - 안 제4조에서 상품권 종류와 유효기간을 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가맹점의 지정, 준수사항, 지정 취소에 대하여 정하고
  -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판매 대행점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정하였었으며
  - 안 제10조에서 환전 청구 및 환전에 대하여 정하고
  -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할인판매, 상품권 활성화 시책에 대하여 관한 사항을
  -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 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유통질서 확립에 대하여 정하고

- 안 제15조 및 제16조에서 환전되지 않은 상품권의 귀속, 우대한 금액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조례제정은 타당하지만, 제6조 3항과 동조 5항 규정 및 제11조와 제14조의 상충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비용추계서의 추계결과 1차년도와 차기년도 이후의 비용 차이,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에 대한 산출근거 등의 명확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

##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 소재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거창군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거창사랑상품권을 발행 및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창사랑상품권”이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을 말한다.
2. “가맹점”이란 거창사랑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거창군수가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상품권의 발행 등) ① 군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거창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상품권을 개인 및 법인에 판매하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 주는(이하 “환전”이라 한다) 업무를 금융기관(이하 “판매대행점”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종류는 2종으로 하며, 권면액(券面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천원
  2. 1만원
-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가맹점 지정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영업소가 군에 소재할 것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가 아닐 것
  4. 유흥업소 등 상품권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소가 아닐 것
- ② 가맹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 ③ 군수는 가맹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라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 가맹점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가맹점으로 지정한 영업소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가맹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④ 가맹점이 그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6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려는 경우 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다.

-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
- ③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액의 7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잔액을 요구하면 즉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 ④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 ⑤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상품권을 받아 환전해서는 안 된다.

**제7조(가맹점 지정 취소)**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를 위반한 경우

**제8조(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및 폐기 등 유통 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3조에 따른 상품권 담당 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려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상품권을 훼손하여 상품권 권면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2. 상품권을 위조·변조하는 행위
3. 상품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
4. 위조·변조된 상품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을 사용하는 행위

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는 등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해서는 안 된다.

**제10조(환전 청구 및 환전)** ① 가맹점은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환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 환전한도는 가맹점당 월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환전해야 한다.

**제11조(할인 판매 등)** ①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금액의 6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 할인구매액은 개인의 경우 연간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맹점과 법인의 경우에는 할인하여 판매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를 판매 및 환전금액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설 및 추석 등 연 4회 이내, 상품권 금

액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12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 군수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 이용 실적이 우수한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추가 할인 판매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각종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갖추어 두고, 상품권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품권 담당 공무원은 판매대행점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4조(유통질서 확립)**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상품권의 판매가격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환전되지 않은 상품권의 귀속)**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의 판매금액은 군에 귀속된다. 이 경우 귀속되는 금액은 판매금액이 확인될 때에는 판매금액으로, 확인이 불가능할 때에는 권면액의 90퍼센트로 한다.

**제16조(우대한 금액의 환수)** 군수는 사용자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2. 25, 거창군수 제출
- 나. 회부일자 : 2019. 2. 25.
- 다. 상정일자 : 제23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9. 3. 13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덕기 환경과장]

가.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폐소화기가 생활폐기물로 지정됨에 따라 조례에 노후소화기의 수거근거를 마련하여 폭발 위험이 있는 노후소화기 처리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법령 근거없는 부담규정 등 정비(안 제11조제1항·제2항, 제25조)
  - 과태료, 보고·검사 규정 삭제
  - 과태료 관련 별지서식 삭제
- 장려금 지급대상 명확화(안 제11조)
- 폐소화기 배출기준 신설(안 별표 5)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재승]

-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폐소화기가 생활폐기물로 지정됨에 따라 조례에 노후소화기의 수거근거를 마련하여 폭발위험이 있는 노후소화기 처리를 원활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
  - 안 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제25조에 법령 근거없는 부담규정인 과태료, 보고·검사 규정과 과태료 별지서식을 삭제하였으며
  - 안 제11조에 장려금 지급대상 명확화하고
  - 안 별표 5 폐소화기 배출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 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규조문 대비표

##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재활용 가능 쓰레기는 별표6”을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6”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종전 제3항) 중 “따라”를 “따라 개인, 단체 등에”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배출 및 수수료 징수 기준

(단위: 원/개당)

종 별	규 격	처 리 비
가전 제품류	냉장고 500리터 이상 300리터 이상 300리터 미만	8,000 6,000 4,000
	텔레비전 107센티미터 이상 30센티미터 이상	5,000 3,000
	세탁기 모든 규격	4,000
	에어컨 26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 미만	10,000 5,000 3,000
	가스오븐레인지 높이1m이상	4,000
가구류	장농 90센티미터 이상 1쪽 90센티미터 이상 1/2쪽 90센티미터 미만 1쪽 90센티미터 이상 1/2쪽	15,000 8,000 10,000 5,000
	서랍장식장 1대당	5,000
	서랍장 5단 이상 4단 이하	4,000 2,000
	식탁 6인용 이상 6인용 이하	5,000 4,000
	화장대 모든 규격	3,000
	장식장 모든 규격	4,000
	응접테이블 1대당	4,000
	응접세트 긴의자 의자	5,000 2,000
	침대 1인용 1인용 매트리스 1인용 프레임 2인용 2인용 매트리스 2인용 프레임	10,000 5,000 5,000 15,000 8,000 7,000
	전축케이스 1개당	3,000

종 별		규 격	처리비
가구류	책상	양수, 대형 편수, 소형	5,000 4,000
	신발장	모든 규격	2,000
	문갑	모든 규격	3,000
	쇼파	1인용 소형 4인용 대형 6인용 이상	5,000 7,000 10,000
	밥상	4인 이상 4인 미만	3,000 2,000
	싱크대	모든 규격	5,000
	책꽂이	모든 규격	3,000
	의자	모든 규격	3,000
	옷걸이(행거)	모든 규격	2,000
	생활용품	캐비닛	모든 규격
서류캐비닛		4단 이상 3단 이하	3,000 2,000
피아노		어프라이트 그랜드	10,000 15,000
쌀통		용량 80킬로그램 이상 용량 80킬로그램 미만	4,000 3,000
벽시계		1미터 이상 1미터 미만	5,000 3,000
인형류		5킬로그램 기준	2,000
장난감류		5킬로그램 기준	2,000
가방		1개당	2,000
액자		1개당	4,000
진열대		1개당	2,000

종 별	규 격	처리비	
그 밖의 폐기물	문짝	1쪽당	5,000
	수족관	100 <u>센티미터</u> 이상	7,000
		100 <u>센티미터</u> 미만	4,000
	거울	1개당	3,000
	자전거	유아용	4,000
		어른용	5,000
	운동기구	1 <u>미터</u> 이상	5,000
		1 <u>미터</u> 미만	3,000
	의료기기	1 <u>미터</u> 이상	5,000
		1 <u>미터</u> 미만	3,000
	유모차	모든 규격	4,000
	깨진 유리	10킬로그램 기준	2,000
	항아리	1개당	3,000
	세면대	모든 규격	3,000
	물탱크 포함한 변기통	모든 규격	5,000
	이동식 변기통	1개당	10,000
	찬장	1대당	3,000
	가스렌지 받침대	모든 규격	2,000
	고무통	1개당	5,000
	욕조	모든규격	3,000
	장판	3.3제곱미터당	3,000
	물탱크	킬로그램당 (1톤탱크: 26킬로그램)	280
	카펫	3.3제곱미터당	2,000
	이불	1개당	2,000
	목재	20킬로그램 기준	2,000
	플라스틱류	10킬로그램 기준	2,000
	재봉틀	1개당	5,000
	탁구대	1개당	5,000
	병풍	1개당	2,000
	간판	60×180 <u>센티미터</u> 이상	7,000
		60×180 <u>센티미터</u> 미만	4,000
입간판		3,000	
건설폐기물	톤당	28,000	
롤온박스	1대당	100,000	
<신 설>	폐소화기	3.4킬로그램 이상	4,000
		3.4킬로그램 미만	3,000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활폐기물"이란 <u>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과 제2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사무실, 화장실쓰레기등 가정쓰레기와 성질,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말한다.</u></p> <p>2.~7. (생략)</p> <p>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p> <p>①~② (생략)</p> <p>③ <u>재활용 가능 쓰레기는 별표6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u></p> <p>④ (생략)</p> <p>제11조(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p> <p>① <u>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u></p> <p>② <u>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 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u></p> <p>③ <u>군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거량 또는 판매금액에 따라 일정비율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활폐기물"이란 「<u>폐기물관리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과 제2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사무실, 화장실쓰레기등 가정쓰레기와 성질,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말한다.</p> <p>2.~7. (현행과 같음)</p> <p>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6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u></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1조(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군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거량 또는 판매금액에 <u>따라 개인, 단체 등에</u> 일정비율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보고, 검사등) ①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에 명기한 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또는 사무소,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와 시설장비, 현물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적정 재활용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사업장</li> <li>2.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사업장</li> <li>3. 쓰레기 봉투 제작업자</li> <li>4. 쓰레기 봉투 판매자</li> <li>5. 청소대행업자</li> </ol> <p>② 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질문이나 자료제출 장부검사등의 요구가 있을 때 관련자는 지체없이 응해야 한다.</p>	<p>&lt;삭 제&gt;</p>

#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2. 25, 거창군수 제출
- 나. 회부일자 : 2019. 2. 25.
- 다. 상정일자 : 제23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9. 3. 13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덕기 환경과장]

### 가. 제안이유

-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한 정화조 폐쇄로 수거물량이 감소되고 인건비 등 원가상승에 따른 수수료 인상요인이 있어 환경부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현실화 조치요구에 따라 원가를 산정한 결과 현실화율 50퍼센트 정도로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인상(안 별표 6)
  - 수거식 화장실
    - 10리터기준 137원 ⇒ 189원 : 52원 인상(인상률 37.9%)
  - 개인하수처리시설
    - 750리터까지 기본요금 16,070원 ⇒ 18,225원 : 2,155원 인상(인상률 13.4%)

- 100리터마다 초과요금 1,161원⇒1,300원 : 139원 인상  
(인상률 11.9%)

○ 법령 근거 없이 가산금 징수규정 삭제(안 제24조제6항)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재승]**

- 본 조례안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한 정화조 폐쇄로 수거 물량이 감소되고 인건비 등 원가상승에 따른 수수료 인상요인이 있어 환경부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현실화 조치요구에 따라 원가를 산정한 결과 현실화율 50퍼센트 정도로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은
  - 안 별표 6에서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인상하고
  - 안 제24조 제6항에서 법령 근거 없이 가산금 징수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 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

##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를 “처리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수료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을 “개인하수처리시설 오수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제121조부터 제124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을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제94조부터 제97조, 제199조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 규정은 2019년 5월 납기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6]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제24조제1항 관련)

1. 수거식화장실

부과기준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10리터	<u>122원</u>	<u>174원</u>	15원	<u>137원</u>	<u>189원</u>

2. 개인하수처리시설

구 분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기본요금 (750리터까지)	<u>14,945원</u>	<u>17,100원</u>	1,125원	<u>16,070원</u>	<u>18,225원</u>
초과요금 (100리터마다)	<u>1,011원</u>	<u>1,150원</u>	150원	<u>1,161원</u>	<u>1,300원</u>

비고

1. “수집·운반” 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포함
2. “처리” 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말함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p> <p>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에 따름</p> <p>2.~3. (생 략)</p> <p>②~⑤ (생 략)</p> <p>⑥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된 분뇨 처리 수수료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포탈된 금액에 「지방세기본법」이 정하는 가산금을 추가한 금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제28조(이의신청) 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제121조부터 제124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4조(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수료를 부과·징수한다.</p> <p>1.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 오수와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에 따름</p> <p>2.~3. (현행과 같음)</p> <p>②~⑤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p>제28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제94조부터 제97조, 제199조를 준용한다.</p>

#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2. 25, 거창군수 제출
- 나. 회부일자 : 2019. 2. 25.
- 다. 상정일자 : 제23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9. 3. 13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덕기 환경과장]

- 가. 제안이유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동률 증대에 따른 약품비 등 운영비 증가로 사용료 인상요인이 발생하였고, 원가산정 결과 현실화율이 28퍼센트로 낮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인상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인상(안 별표 2)
    - 킬로리터당 16,000원 ⇒ 18,000원 : 2,000원 인상  
(인상률 12.5퍼센트)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재송]

-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동률 증대에 따른 약품비 등 운영비 증가로 사용료 인상요인이 발생하였고, 원가산정 결과 현실화율이 28퍼센트로 낮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 주요내용은

- 안 별표2에서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2,000원 인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구 분	계		수집·운반 수수료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가축분뇨 (원/킬로리터)	<u>16,000</u>	<u>18,000</u>	10,000	<u>6,000</u>	<u>8,000</u>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2. 25, 거창군수 제출
- 나. 회부일자 : 2019. 2. 25.
- 다. 상정일자 : 제23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9. 3. 13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안장근 도시건축과장]

- 가. 제안이유
  - 2013년 최초 위원회 구성 후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폐지하고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가. 주요내용

- 법령 재기재사항인 용어 정비(안 제2조)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7조)
- 거창군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삭제(안 제5장)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재승]

- 본 조례안은 2013년 최초 위원회 구성 후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폐지하고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은

- 안 제2조에서 법령 재기재사항인 용어 정비하고
- 안 제7조에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 안 제5장의 거창군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삭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

##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제7호를 제1호·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중전 제6호) 중 “군”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군민”을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영”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1조와 영 제7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5장(제20조,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를 말한다.</p> <p>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p> <p>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p> <p>4. “자전거도로”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구분되는 자전거 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및 자전거전용차로를 말한다.</p> <p>5. “자전거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7조·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과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주택법」 제21조에 따른 주택단지등에 설치하는 자전거의 주차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p> <p>6. “군민자전거”란 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군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p> <p>7. “군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이란 군민자전거를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군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p> <p>8.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p>			<p><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1. “군민자전거”란 <u>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u>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군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p> <p>2. “군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이란 군민자전거를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군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p> <p>&lt;삭 제&gt;</p>

현행	개정안
<p>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u>법 제5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중 <b>영</b> 제5조에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p> <p>②~④ (생략)</p> <p>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시설 기준) ① 군수는 <u>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u></p> <p>② 군수는 <u>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자 또는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영 제7조제2항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u></p> <p>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u></p> <p>제18조(전담부서의 설치) <u>군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u>「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중 「<b>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b>」(이하 “<b>영</b>”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p> <p>②~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시설 기준) ① 군수는 <u>법 제11조와 영 제7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u></p> <p>&lt;삭제&gt;</p> <p>② <u>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u></p> <p>&lt;삭제&gt;</p>

현행	개정안
<p><u>제5장 거창군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u>  <u>제20조(설치)</u>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21조(삭제 2015.12.10.)</p> <p><u>제22조(기능)</u>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활성화계획 및 연도별 활성화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li> <li>2.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li> <li>3.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에 관한 군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li> <li>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li> <li>5.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 등의 참여 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li> <li>6.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사항 등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li> <li>7.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li> </ol> <p><u>제23조(구성)</u>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건축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p>	<p>&lt;삭 제&gt;          &lt;삭 제&gt;</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현행	개정안
<p>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li> <li>2. 경찰서, 교육지원청, 지방국토관리청 등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li> <li>3. 도시계획·도로교통 또는 자전거이용시설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li> <li>4. 자전거이용과 관련 있는 민간단체 대표</li> <li>5. 그 밖에 군수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li> </ol>	<p>&lt;삭제&gt;</p>
<p><u>제24조(위원의 임기)</u>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lt;삭제&gt;</p>
<p><u>제25조(위원장의 직무)</u>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lt;삭제&gt;</p>
<p><u>제26조(회의)</u>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p>	<p>&lt;삭제&gt;</p>

현행	개정안
<p>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u>제2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u></p> <p><u>제2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u></p> <p><u>제2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 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2. 25, 거창군수 제출
- 나. 회부일자 : 2019. 2. 25.
- 다. 상정일자 : 제23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9. 3. 13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강국희 농업축산과장]

가. 제안이유

-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인들의 농업소득을 월별로 배분하여 계획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거창군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에 대한 뜻을 밝혀 규정함(안 제2조)
  - 농업인이 지역농협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협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사업
- 사업 대상자 기준을 정함(안 제3조)
  - 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일 것
  - 매년 군수가 공고하는 기준치 수매 물량 이상 생산할 것

-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 및 농산물대금을 월별로 선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할 것
- 사업 대상자 신청과 심의를 정함(안 제4조·제5조)
- 지역농협과 협약체결, 그 지역농협의 업무를 정함(안 제6조·제7조)
-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 이자 등의 정산절차를 정함(안 제8조)
- 사업의 재원을 정함(안 제9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재송]

- 본 조례안은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인들의 농업소득을 월별로 배분하여 계획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거창군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산물 대금 선지급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2조에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에 대한 뜻을 밝혀 규정하고
  - 안 제3조에서 사업 대상자 기준을 정하며
  -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사업 대상자 신청과 심의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 안 제6조 및 제7조에 지역농협과 협약체결, 그 지역농협의 업무를 정하고
  - 안 제8조에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 이자 등의 정산절차를 정하며
  - 안 제9조에서 사업의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에 따라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한다)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협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 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 대상자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사업 대상자”라 한다)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는 농업인일 것
  2. 매년 군수가 결정·공고하는 기준치 수매 물량 이상을 생산할 것
  3.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 및 농산물대금을 월별로 선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할 것
- ② 군수는 군의 주요 재배 농산물 중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농협과 협의해야 한다.

제4조(사업 대상자 신청) 사업 대상자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업 대상자의 심의)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업 대

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제9조에 따른 거창군 농업발전자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협약 체결 등) ① 군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농협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에 이자 및 수수료(이하 “이자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의 업무)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 대상자에게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산물대금 선지급 약정에 따라 농산물의 출하 전에 출하할 예상 소득 중 일부를 나누어 미리 지급해야 한다.

제8조(이자등의 정산절차) ①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은 수매가 끝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자등 지급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의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에 이자등을 지급해야 한다.

제9조(재원) 제8조에 따른 이자등의 재원은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에 따른 자금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사업”을 “사업, 「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 또는 그 밖에 농업인 지원사업”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신청서

###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란?

농업인에게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예상 소득 중 일부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여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생활의 계획적 경영을 지원하고, 수매 후 농가가 지급받을 금액을 농협에 정산하며 원금에 대한 이자는 거창군에서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 ○ 농업인 현황

농 가 현 황					연 락 처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성별	영농경력	집	휴대전화
				년		

### ○ 신청내역

농작물 재배 면적(제곱미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품종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수량 (40킬로그램/포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적용 희망량	
			수량(포대/40킬로그램)	희망금액(천원)

「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 년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 붙임 1. 전년도 농협 자체수매 확인서(지역농협 발행) 1부.  
 2. 신용조사서 및 농업경영체등록증 각 1부.  
 3.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증명서(해당 농가) 1부.

20 . . .

신청인 주 소:

성 명: (남/여) (인)

###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 및 「농협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에 제공하고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거부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 이자등 지급청구서

1. 사 업 명: 20 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

2.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농협명: 0000농업협동조합 )

○ 주 소:

○ 대표자: (남/여)

3. 이자등 청구액: 금 원(W )

4. 이자등 청구 명세

(농가, 포대/40킬로그램, 원)

사 업 대상자	신청량 (계약량)	지 급 개월수	월 지급액	총 지급액	이 율	이 자 청구액	대행 수수료
					연 퍼센트		

5. 지급계좌번호: 농협 (통장사본 첨부)

위와 같이 20 년 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사업에 따른 이자등을 정히 청구합니다.

- 붙임 1.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이자 개인별 내역(한글 서식) 1부.  
2.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이자 월별 계산내역(엑셀 서식) 1부.

20 . . .

청구자 주 소:

성 명: 0000농업협동조합 (인)

거창군수 귀하

**거창소방서 웅양119지역대**  
**공용건축물 신축 및 토지 무상사용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2. 25, 거창군수 제출
- 나. 회부일자 : 2019. 2. 25.
- 다. 상정일자 : 제23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9. 3. 13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송영훈 안전총괄과장]

가. 제안이유

- 거창군 북부지역(웅양면, 주상면, 고제면)은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해 소방수해 사각지대로 재난의 신속대응이 어려워 웅양권역에 신설하고자 하는 경상남도(거창소방서)에 「거창소방서 웅양119지역대」 신축부지 사용을 무상으로 지원하고자 함.

가. 주요내용

- 시설현황
  - 시 설 명 : 거창소방서 웅양119지역대
  - 소 재 지 : 거창군 웅양면 노현리 112 등 3필지
  - 건축규모 : 연면적 779.12㎡, 2층 1동(부지 2,076㎡)

구분	면적	시 설 배 치	비고
1층	481.64㎡	사무실, 차고, 창고, 감염관리실	
2층	297.48㎡	식당, 대기실, 체력단련실, 의소대사무실	

- 소 방 력 : 인원 10명, 차량 2대

○ 지원계획

- 재산현황

(단위 : m<sup>2</sup>, 천원)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용도지역
	소 재 지	지목	면 적		
계			2,076		
토지	웅양면 노현리 112	답	349	16,054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웅양면 노현리 113	답	1,094	48,683	
	웅양면 노현리 114	답	633	29,118	

- 사용면적 : 2,076m<sup>2</sup>(전체면적)

- 사 용 료 : 무상사용

· 웅양면 노현리 112의 2필지 부지는 공유재산(행정재산)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경상남도지사)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가 면제되며 무상 사용 가능 (계약 갱신할 때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

- 사용기간 : 거창소방서 웅양119지역대가 소방관련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폐쇄하기 전까지(사용허가는 5년 단위로 갱신함)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1항

- 영구시설물 축조 : 다른 지방자치단체(경상남도지사)의 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는 의회의 동의시 축조 가능  
⇒ 동의 후 상호 합의서(붙임2) 체결 및 사용수익 허가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제11호

○ 추진경과

- 2017. 2월 : 웅양119지역대 건립부지 지원 검토보고

- 2017. 4월 : 관련부서(도시건축과) 적합성 검토

- 2017. 6월 : 군·거창소방서·웅양면 합동 현장 확인
- 2017. 9월 : 부지 매입비 확보(2회 추경: 3억원)
- 2017. 11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 2018. 2월 : 부지매입 완료
- 2019. 1월 : 부지 무상사용 협조요청(도 소방행정과)
- 2019. 2월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

○ 향후일정

- 거창군 ⇔ 경상남도 토지사용 협약체결 : 2019. 3.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거창군 ⇒ 경상남도) : 2019. 3.
- 거창소방서 웅양119지역대 신축 : 2019. 3. ~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재송]

○ 본 동의안은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하여 소방수혜 사각지대인 거창군 북부지역(웅양면, 주상면, 고제면)에 재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거창소방서 웅양119지역대』 공용건축물 신축 및 토지 무상사용을 동의하는 것으로 원거리 지역의 체계적인 소방안전망 구축으로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 주요내용은

- 거창군 웅양면 노현리 112 등 3필지에 거창소방서 웅양 119 지역대를 설치하면서
- 공유재산 무상사용과 공용건축물 신축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유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거창군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거창소방서 용양119지구대의 공용건축물 신축 및 토지 무상사용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주택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2. 25, 거창군수 제출
- 나. 회부일자 : 2019. 2. 25.
- 다. 상정일자 : 제23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9. 3. 13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덕기 환경과장]

가. 제안이유

- 주택 슬레이트 지붕 노후화에 따른 서민층 건강보호 및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 개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안정성, 전문성,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19. 4월 ~ 2021.12월 (3년간)
- 사업비 : 776백만원/년(국388.2, 도116.4, 군271.7)
  - 슬레이트 처리 : 510.7백만원(국255.3, 도76.6, 군178.7)
  - 지붕개량 지원 : 265.7백만원(국132.8, 도39.8, 군93)
- 사업량 : 슬레이트 주택 240동(철거 152동 및 지붕개량 88동)
- 위탁비용 : 62.8백만원/년(사업비의 8%)
- 위탁범위 : 슬레이트 처리(해체·제거) 및 지붕개량사업 위탁

-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업체 선정, 계약체결
- 슬레이트, 지붕개량 면적조사 수행
- 슬레이트 처리, 지붕설치 등 공사현장 감독 및 안전관리, 교육실시
- 사업결과 제출 및 정산

○ 2019년 민간위탁 추진배경

- '17년부터 도시건축과 등 타부서 연계사업을 환경부서에서 일원화하여 직접 추진함에 따라 사업량 증가, 범위확대, 석면 관리 안정성 및 전문성 부족 등 업무추진 애로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 직접수행 또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권고(2018.11)함에 따라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방식으로 추진

⇒ 민간경상보조(307-02) → 민간위탁사업비(402-03)로 예산의 변경사용

○ 운영계획(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방법)

- 업체선정 : 공개입찰(1개 업체)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후 선정
- 참가자격
  - 슬레이트 처리(해체·제거)및 지붕개량 사업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인력의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종사자의 근로조건 유지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수탁기관의 이사·임원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 위탁업체 선정방법
  -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 절대평가(40점), 상대평가(60점)
    - ▶ 사업수행능력 : 배점 40점(발주부서 평가, 절대평가)
      - ⇒실적평가(30점), 경영상태(10점)

- ▶ 사업수행계획 적정성 : 배점 60점(심의위원 평가, 상대평가)
  - ⇒사업수행 목표, 준비계획, 인력편성 및 관리계획 등
- 평가방법
  - 절대평가 : 평가산식에 의해 담당부서 평가
  - 상대평가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평가
- 위탁기간 : 위탁업체와 계약일로부터 ~ 2021. 12월(3년간)
- 향후일정
  - 예산의 변경사용 : 2019. 4월중
  - 민간위탁업체 선정 공고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 2019. 3월말 ~ 4월중
  - 업체선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 : 2019. 4월말
  - 위수탁 사업추진 및 정산 : 2019. 5. 1. ~ 2019. 12. 31.
- 소요예산 : 사업비의 8%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재승]

- 본 동의안은 2017년 2월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한국환경공단 위탁 규정 폐지로 지자체에서 직접처리 하던 것을 2018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 직접수행 또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택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것으로서
  - 위탁기간은 2019. 4월 ~ 2021.12월까지 3년간으로
  - 사업물량은 주택 240동에 매년 776백만원이 소요되며, 위탁 비용은 62.8백만원이 발생하게됨
  - 위탁범위는 슬레이트 처리(해체·제거) 및 지붕개량사업임

- 검토의견으로는 주택 슬레이트지붕 처리(해체, 제거)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붕개량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대행사업 추진으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택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에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